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2
----------	-----

제출년월일 : 2003. 7. 1 .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로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지정된 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1제1호).
- 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1제2호).
- 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1제3호).
-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1제4호).

3.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05.22 ~ 06.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5조 관련)

근거 법령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0	200	300
	2.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3. 법 제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0	100	200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	100	2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1]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근거법령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근거법령	부과대상	부과대상(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1.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0	50	100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1.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0	200	300
	2.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50	100		2.법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0	200	300
	3.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50	100		3.법제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0	100	200
						4.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	100	200